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광주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단382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 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단38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혜윤(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6. 9.

## 주 문

-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4.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치과에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8. 12:13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너 붕알을 터트려버리기전에 가만히 있어 켜 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 15:18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10: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네 인생이나 잘살아 개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 15:19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1.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등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으로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5. 7.경 벌금 300만 원의, 2016. 6.경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6. 4.경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성인혜